

II. 공정거래 제도의 이해

1.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 공정거래법의 목적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984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999년 2월 5일에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다.

나. 공정거래법의 구조

공정거래법이 유지하고자 하는 경쟁조건으로서는 크게 경쟁적인 시장구조의 유지와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인위적인 제약의 제거 등 2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구조의 규제와 경쟁제한행위의 금지는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쟁조건 유지라는 목적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 즉, 공정거래법상의 제 규제들은 크게 구조규제와 행태규제로 구분할 수 있고, 구조규제는 구조적인 시장결함 및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시장경쟁의 회복을 통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행태규제는 개별기업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쟁 제한적 거래행태 및 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제도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보다 사회적·정치적 정책목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시장구조의 개선	거래행태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규제 완화 및 경쟁제한제도 개선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요건을 제한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경제력집중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금지 - 채무보증의 금지 및 보증해소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남용 - 출고조절 - 다른 사업자의 사업방해 - 신규사업자의 진입방해 등 ■ 부당의 공동행위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을 결정·유지·변경 - 거래조건·대금지급조건 결정 - 생산·출고·거래 등의 제한 등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불공정거래행위 -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2. 공정거래법 주요내용

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공정거래법은 ①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③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④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⑤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5개 유형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대표적인 남용행위로 규정(제 3 조의 2)하고 있으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기준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 분의 50 이상이거나,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 분의 75 이상(100 분의 10 미만인 자 제외)인 사업자로 되어 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할 수 있는 힘 즉,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하며,

- 이와 같은 사업자는 축적된 자본에 의한 기술혁신, 대규모투자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경쟁의 기회가 적은 독과점사업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고 이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일반사업자들의 행위에 비해서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여 이들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나.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공정거래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등 5 가지 유형의 기업결합을 금지(제 7 조 제 1 항)하고 있으며,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 천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의 특수 관계인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 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임원겸임의 경우, 합병 및 영업양수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100 분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등은 이를 30 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기업결합 신고의무조항(제 12 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추정조항(제 7 조 제 4 항)을 두고 있으며,

또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전환하고자 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제 8 조)하여야 하며, 지주회사는 자본총액의 2 배를 초과하는 채무액을 보유하거나 자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40(주권상장, 공동출자법인 또는 벤처지주회사인 경우는 100 분의 20)미만을 소유하거나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제 8 조 의 2)하고 있으며, 상호출자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설립은 지주회사와 자 회사간의 채무보증, 자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 등을 해소하도록 제한(제 8 조의 3) 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규모가 5 조원이상인 기업 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자산총액이 10 조원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제 14 조)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합병 또는 영업양수 및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 변제의 수령의 경우 등을 제외한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를 금지(제 9 조 및 제 9 조의 2)하고 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무보증을 제외한 채무보증을 금지(제 10 조의 2)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 현황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제 13 조)을 두고 있다.

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또는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① 가격의 결정·유지·변경행위, ②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및 대금지급조건 결정행위, ③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④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⑤ 설비의 신·증설 및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⑥ 상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⑦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설립행위, ⑧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⑨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등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제 19 조제 1 항)하고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해 약정하는 계약 등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제 19 조 제 4 항)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제 19 조 제 5 항)과 신고자에 대한 면책조항(제 22 조의 2)을 두고 있다.

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은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②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④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⑤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⑥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⑦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⑧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금지함은 물론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제 23 조 제 1 항) 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 ⑥,⑦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제 23 조 제 2 항) 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 23 조 제 3 항)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제 23 조 제 4 항)하고 있다.

마. 사업자 단체

공정거래법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④ 사업자에게 불공정 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제 26 조 제 1 항)하고 동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제 26 조 제 3 항)하고 있다.

3.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률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 하도급법)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규제내용

- 9 개 조항의 작위 의무

·①서면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②선급금의 지급, ③내국신용장의 개설, ④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⑤하도급대금의 지급, ⑥대금지급보증, ⑦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⑧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⑨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13 개 조항의 금지 의무

·① 부당한 특약의 금지, ②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③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④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⑤부당 반품 금지, ⑥부당 감액 금지, ⑦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⑧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청구 금지, ⑨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⑩부당한 대물변제금지, ⑪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⑫보복조치금지, ⑬탈법행위 금지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 표시광고법)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규제내용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광고
- 표시·광고내용의 실증 등
-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 약관법)

약관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규제내용

-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 사업자는 약관내용의 명시·설명 의무가 있으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함. 또한 고객이 요구할 경우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불공정약관의 무효 및 사용금지
 -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로 할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금한다.